#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5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7. 2.) 상정 및 의결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건축과장 안기석)

#### □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의 전부개정(법률 제8974호, 2008. 3. 21. 공포·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대통령령 제20647호, 2008. 2. 22. 공포·시행)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.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 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□ 주요내용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을 추가로 규정함.(안 제8조제1항제3 호·제4호, 제2항제6호, 신설)

- 5층 이상 이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미관도로 전면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않는 증축은 미관심의대상에서 제외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조항 변경 등에 따라 건축조례 개정(안 제19조, 제34조)
-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: 조항변경(영 제113조→영 제27조의 2)
- 영 제15조제1항제3호 삭제: 가설건축물 층수 "2층 이하" 삭제
- 다. 「건축법」조항 개정으로 법령에 맞추어 조항 변경함.(안 제4조, 제4조의2, 제8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17조의3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9조, 제30조, 제30조의2, 제34조, 제44조)
- 라. 국토해양부조강 준 개정고사에 따라 면적당 삭제기준 등을 개정함(안 제24조) 마.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.(안 제27조의2, 별표 4) 바.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상향 조정함.(안 제27조)
- 사.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부천시건축문화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5조의2, 신설)

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의		답	변	
○ 부천시 건축( 는 것 보다는 는 방안도 검	부정기적으로 시행		우수, 최우수	상을 제정 시행 등 등급별도 시행하는 방연	시상하는
총 부과횟수를 경우 불법행위	에 부과하는 이행강제 를 5회에서 3회로 줄임 이에 대한 강력한 제기 이에 대책은 있는지?	빌	있으나 실질적	금은 년2회를 - 으로 연1회 부: 2~3회 정도 ! 있음.	과하고 있

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- 5. 심사결과
  - 수정의결
- 6. 소수의견의 요지
 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없 음
- 8. 덧붙임 :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번	안호	관련 제433호
의	결	2009. 7. 10.
년월	일	(제153회)

제안년월일 : 2009. 7. 7.

제 안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건축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는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 준에 현행 조례 [별표 3] 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[별표 3] 의 조문 규정 누락

○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을 정한 [별표 4] 제1항 마호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[별표 2] 제1항 바호에서 정한 범위인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에서 정하여야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 정하여 수정을 요함

#### 2. 주요골자

- 부천시 건축 조례 제21조제1항에 누락 조문 삽입
- 부천시 건축 조례 [별표 4] 제1항 마호에 정한 건축선으로부 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 수정

#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부천시 건축 조례 제21조제1항의

"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"를

"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"로 한다

- 부천시 건축 조례 [별표 4] 제1항 마호의
  - "・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:1미터 이상
    - ·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: 0.5미터 이상"을
  - "·1미터 이상으로"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#### [별표 4]

# 대지 안의 공지 기준(제27조의2 관련)

## 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

개 정	안	수 주	형 안
대상 건축물	띄어야 하는 거리	대상 건축물	띄어야 하는 거리
마.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	・폭 20미터 이상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: 1미터 이상 ·폭 20미터 미만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: <u>0.5미터</u> 이상	아니안 선숙물	· <u>1미터 이상</u>

#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용의 완화)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기도 건축 조례」제3조를 준용한다.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)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- 1. 기존 건축물의 재축
- 2.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·영·시행규칙("법령 등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
- 3.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. 다만, 해당 지역의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·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

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. 제4조의2 중 "제5조의4"를 "제8조"로 하고, "제48조·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56조·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"으로 하며, "의하여야"를 "따라야"로 한다.

제5조 중 "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4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"를 "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기타분야"를 "그 밖의 분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"를 "3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전임자의 잔임기간"을 "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 제4호 중 "기타 품위 등"을 "그 밖에 품위 등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기능)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
- 3. 미관지구안의 5층 이상이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 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
- 4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나목 중 "범위 안에서"를 각각 "범위에서"로 하며, 제5호다목의 "제38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38조에 따른"으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호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항에 따라"로 하며, "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항에 따라"로 하며, "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5항에 따라"로 한다.
  - 1.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
- 6.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 제9조제2항 중 "사고가 있을 때"를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

할 수 없을 때"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사항에 대하여는"을 "사항은"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아니 하다"를 "아니하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별 의견,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 차 등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1조 중 "건축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실무자"를 "건축업무담당 및 담당자"로 한다.

제12조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고, "그 업무"를 "업무"로 하며, "아니된다"를 "아니 된다"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일비 등)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3인이상 5인이하"를 "3명 이상 5명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10조 내지 제14조"를 "제10조부터 제14조까지"로 한다. 제16조 중 "운영에 관하여 필요한"을 "운영에 관한"으로 한다.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·제 14조·제16조·제19조·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제17조의2제1항 중 "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3조제2항에 따라"로 하고, "제16조에 의한"을 "제21조에 따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"를 "제14조제2항에 따라"로 하고, "건설교통부장관"을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하며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제18조제2항"을 "제22조제2항"으로 한다.

2.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(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)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

제17조의3제1항 중 "법 제7조 또는 법 제8조"를 "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"로 하고, "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2조에 따라"로 하며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"제7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"을 "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영 제10조의 규정에

의하며"를 "영 제10조에 따르며"로 하고, "제11조에 의한"을 "제11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8조 중 "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호에 따라"로 하고, "각호"를 "각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한다. 제19조제1항 중 "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0조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"각호"를 "각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3년이내"를 "3년 이내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가스등"을 "가스 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제64조 규정"을 "제64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2호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4호에 따른"으로 한다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)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·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로 한다.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, 건축주의 추전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- 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- 2.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- 3. 법 제19조 · 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, 가설건축물 허가

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
- 4.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
- 5.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- 제21조(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) ①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
  - 1.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
  - 2.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
- 3.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 제21조의2를 삭제한다.

-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22조(건축지도원)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  - 1. 건축사
  - 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보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  - 3.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  - 4.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
  -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-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22조의2 (건축물의 유지·관리) 영 제23조제2항에서 "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"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. 다만,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」및「주택법」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
- 제23조(대지안의 조경)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1. 연면적(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2천제곱미터

- 이상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. 다만,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
- 2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
- 3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
- 4.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- 5.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
-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1항제5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
- 2.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한정한다)
  - 3.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

- 4. 교정시설, 군사시설
-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(이하 "조경면적"이라 한다)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(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)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·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,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
- 2.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(흉고직경 20센 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 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을 독립식재 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할 수 없을 것. 다만, 사업승인대상 아파 트는 제외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4조(식재 등 조경기준) ①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,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.
  -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승강기탑, 계단탑, 옥탑

-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,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.
- 1. 흉교직경수종: 20센티미터 이상
- 2. 근원직경수종: 30센티미터 이상
- 3. 그 밖의 수종: 수고 4미터, 수관폭 3미터 이상 제25조 중 "조경시설등으로"를 "조경시설 등으로" 한다.

제26조 중 "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45조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"다음 각 호의 1과 같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의 "공원내"를 "공원 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의 "동 통로"를 "같은 통로"로 한다..

제27조 중 "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"을 "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60제곱미터"를 "90제곱미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70제곱미터"를 "90제곱미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"150제곱미터"를 각각 "200제곱미터"로 하며,같은 조 제12호 중 "200제곱미터"를 "350제곱미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14호 중 "60제곱미터"를 "90제곱미터"로 한

다.

제27조의2 중 "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58 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"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81조제 1항제2호에 따라"로 하고,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 3호 중 "기타 시장이"를 "그 밖에 허가권자가"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"다음 각 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며, "제51조제3항의 규정"을 "제60조제3항"으로 하고, "8분의 1이상"을 각각 "8분의 1이상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35미터이하"를 "35미터 이하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호의 규정"을 "제1호에"로 하고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며, "10미터이하"를 "10미터이하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2호의 규정에"를 "제2호에"로 하며, "35미터이하"를 "35미터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51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"를 "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"동법 제3항의 규정"을 "같은 법 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"동법 제3항의 규정"을 "같은 법 제3항"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 중 "4미터이하"를 "4미터 이하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8미터이하"를 "8미터 이하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

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8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"를 "영 제86조제2항 단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중 "제53조제4항"을 "제61조제4항"으로 하고, "경우에 한하여 법제53조제1항"을 "경우에만 법제61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0조의2 중 "제53조제2항"을 "제61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며,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2개소이내"를 "2개소 이내"로 하고, "45제곱미터이상"을 "45제곱미터 이상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40퍼센트이상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"을 "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50룩스이상"을 "50룩스 이상"으로 한다.

제34조(공개공지의 확보)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(이하 "공개공지등"이라 한다)을 확보하 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.

- 1. 대상건축물: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 활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(학교를 제외한다), 노유자시 설, 생활권수련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
- 2. 면적: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. 다만, 영

-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가.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: 대지 면적의 5퍼센트
- 나.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: 대지 면적의 7퍼센트
- 다.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: 대지면적의 10퍼센트
-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 - 1. 용적율의 완화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율 이하(1+(공 개공지등 면적÷대지면적))×「부천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른 용적율
- 2.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(1+(공개공지등 면적÷대지면적))×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43조(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)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, 저장시설(시멘트저장용 싸이로

를 포함한다), 유희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.

- 1. 제조시설: 레미콘믹서,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- 2. 저장시설: 사이로, 건조시설, 석유저장시설, 석탄저장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- 3. 유희시설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. 호이스트
-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(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)인 냉각탑, 냉장고, 종탑, 물탱크,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제69조의2제1항"을 "제80조제1항"으로 하고, "제69조의2제1항제2호"를 "제80조제1항제2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"을 "제83조에 따른 옹벽 등"으로 하고. "별표15"를 "별표 15"로 하며, "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

"제15호에 따라"로 하고, "100분의1 이하"를 "100분의 1 이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하고, "5회이내"를 "3회 이내"로 한다.

제45조 중 "30m이상"을 "30미터 이상"으로 하고, "제8조 규정에 의한"을 "제8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부천시 건축문화상)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매년 구조, 기능,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발굴 시상하는 부천시건축문화상(이하 "건축문화상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건축문화상의 시행과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건축문화상심사 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46조 중 "시행에 관하여 필요한"을 "시행에 필요한"으로 한다.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 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.

"별지"

[별표 1]

#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(제17조 관련)

면 적	금 액
가. 200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4천원
71. 2007/IB 1721 17 U	기 타 9천원
나.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6천원
다. 200세합니다 이경 1전세합니다 미년	기 타 2만원
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	5만원
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	10만원
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	20만원
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	<u>41만원</u>
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	<u>81만원</u>
30만제곱미터 이상	<u>162만원</u>

<sup>※</sup>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.

# 대지 안의 공지 기준(제27조의2 관련)

### 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띄어야 하는 거리
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· 준공업지역: 1.5미터 이상 ·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: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・3미터 이상
다.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용건축물	・3미터 이상
라. 공동주택	<ul><li>아파트: 3미터 이상</li><li>연립주택: 2미터 이상</li><li>다세대주택: 1미터 이상</li></ul>
마.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	· 1 <u>미터 이상</u>

# 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띄어야 하는 거리
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· 1미터 이상
나. <u>해당</u>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· 준공업지역: 1미터 이상 ·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: 2미터 이상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・2미터 이상
라.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 이용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을 제외한다)	・2미터 이상
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<ul> <li>아파트: 5미터 이상(다만, 15층 이하는 3미터 이상)</li> <li>연립주택: 2미터 이상</li> <li>다세대주택: 1미터 이상</li> </ul>
바.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	• 0.5미터 이상

#### [수정안 포함]

####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용의 완화)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기도 건축 조례」제3조를 준용한다.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)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- 1. 기존 건축물의 재축
- 2.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·영·시행규칙("법령 등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
- 3.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. 다만, 해당 지역의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·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. 제4조의2 중 "제5조의4"를 "제8조"로 하고, "제48조·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56조·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"으로 하며, "의하여야"를 "따라야"로 한다.

제5조 중 "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4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"를 "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기타분야"를 "그 밖의 분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"를 "3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전임자의 잔임기간"을 "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 이 경우 필요한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 제4호 중 "기

타 품위등"을 "그 밖에 품위 등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8조(기능)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 - 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
    - 3. 미관지구안의 5층 이상이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 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
    - 4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나목 중 "범위 안에서"를 각각 "범위에서"로 하며, 제5호다목의 "제38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38조에 따른"으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호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항에 따라"로 하며, "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5항에 따라"로 한다.

- 1.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
- 6.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 제9조제2항 중 "사고가 있을 때"를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"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사항에 대하여는"을 "사항은"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아니 하다"를 "아니하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별 의견,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 차 등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1조 중 "건축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실무자"를 "건축업무담당 및 담당자"로 한다.

제12조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고, "그 업무"를 "업무"로 하며, "아니된다"를 "아니 된다"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일비 등)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

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3인이상 5인이하"를 "3명 이상 5명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10조 내지 제14조"를 "제10조부터 제14조까지"로 한다.

제16조 중 "운영에 관하여 필요한"을 "운영에 관한"으로 한다.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·제14조·제16조·제19조·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제1항 중 "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3조제2항에 따라"로 하고, "제16조에 의한"을 "제21조에 따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"를 "제14조제2항에 따라"로 하고, "건설교통부장관"을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하며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제18조제2항"을 "제22조제2항"으로 한다.

2.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

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 기간(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)에 6개월 을 가산한 기간

제17조의3제1항 중 "법 제7조 또는 법 제8조"를 "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"로 하고, "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2조에 따라"로 하며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"제7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"을 "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"를 "영 제10조에 따르며"로 하고, "제11조에 의한"을 "제11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8조 중 "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호에 따라"로 하고, "각호"를 "각 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0조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"각호"를 "각 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3년이 내"를 "3년 이내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가스등"을 "가스 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제64조 규정"을 "제64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2호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4호에 따른"으로 한다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0조(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)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·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로 한다.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, 건축주의 추전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  - 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  - 2.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  - 3. 법 제19조·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,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  - 4.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 사 검사 확인
  - 5.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- 제21조(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) ① 법 제27조

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

- 1.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
- 2.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
- 3.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

제2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건축지도원)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- 1. 건축사
- 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보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  - 3.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- 4.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

-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-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22조의2 (건축물의 유지·관리) 영 제23조제2항에서 "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"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. 다만,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」및「주택법」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
- 제23조(대지안의 조경)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1. 연면적(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. 다만,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
  - 2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
  - 3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
  - 4.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

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지면적의 10퍼센 트 이상으로 한다.

- 5.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
-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1항제5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.
- 1.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
- 2.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한정한다)
  - 3.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
- 4. 교정시설, 군사시설
-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(이하 "조경면적"이라 한다)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1.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(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)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

- ·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,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
- 2.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(흉고직경 20센 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 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을 독립식재 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할 수 없을 것. 다만, 사업승인대상 아파 트는 제외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4조(식재 등 조경기준) ①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,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.
  -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승강기탑, 계단탑, 옥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,

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.

- 1. 흉교직경수종: 20센티미터 이상
- 2. 근원직경수종: 30센티미터 이상
- 3. 그 밖의 수종: 수고 4미터, 수관폭 3미터 이상 제25조 중 "조경시설등으로"를 "조경시설 등으로" 한다.

제26조 중 "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45조제1항에 따라"로 하고, "다음 각 호의 1과 같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의 "공원내"를 "공원 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의 "동 통로"를 "같은 통로"로 한다..

제27조 중 "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"을 "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60제곱미터"를 "90제곱미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70제곱미터"를 "90제곱미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"150제곱미터"를 각각 "200제곱미터"로 하며,같은 조 제12호 중 "200제곱미터"를 "350제곱미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14호 중 "60제곱미터"를 "90제곱미터"로 한다.

제27조의2 중 "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58 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"로 한다. 제28조제1항 중 "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81조제 1항제2호에 따라"로 하고, "의한다"를 "따른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 3호 중 "기타 시장이"를 "그 밖에 허가권자가"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"다음 각 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"로 하며, "제51조제3항의 규정"을 "제60조제3항"으로 하고, "8분의 1이상"을 각각 "8분의 1이상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35미터이하"를 "35미터 이하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호의 규정"을 "제1호에"로 하고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며, "10미터이하"를 "10미터 이하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2호의 규정에"를 "제2호에"로 하며, "35미터이하"를 "35미터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제51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"를 "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"동법 제3항의 규정"을 "같은 법 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"동법 제3항의 규정"을 "같은 법 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"동법 제3항의 규정"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"로 하고, "동법 제3항의 규정"을 "같은 법 제3항"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 중 "4미터이하"를 "4미터 이하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8미터이하"를 "8미터 이하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"를 "영 제86조제2항 단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

중 "제53조제4항"을 "제61조제4항"으로 하고, "경우에 한하여 법제53조제1항"을 "경우에만 법제61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0조의2 중 "제53조제2항"을 "제61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며,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2개소이내"를 "2개소 이내"로 하고, "45제곱미터이상"을 "45제곱미터 이상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40퍼센트이상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"을 "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50룩스이상"을 "50룩스이상"으로 한다.

제34조(공개공지의 확보)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(이하 "공개공지등"이라 한다)을 확보하 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.

- 1. 대상건축물: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(학교를 제외한다), 노유자시설, 생활권수런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
- 2. 면적: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. 다만, 영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

- 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가.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: 대지 면적의 5퍼센트
- 나.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: 대지 면적의 7퍼센트
- 다.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: 대지면적의 10퍼센트
-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 - 1. 용적율의 완화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율 이하(1+(공 개공지등 면적÷대지면적))×「부천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른 용적율
- 2.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: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(1+(공개공지등 면적÷대지면적))×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43조(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)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, 저장시설(시멘트저장용 싸이로 를 포함한다), 유희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

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.

- 1. 제조시설: 레미콘믹서,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- 2. 저장시설: 사이로, 건조시설, 석유저장시설, 석탄저장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- 3. 유희시설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

## 4. 호이스트

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(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)인 냉각탑, 냉장고, 종탑, 물탱크,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제69조의2제1항"을 "제80조제1항"으로 하고, "제69조의2제1항제2호"를 "제80조제1항제2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"을 "제83조에 따른 옹벽 등"으로

하고, "별표15"를 "별표 15"로 하며, "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5호에 따라"로 하고, "100분의1 이하"를 "100분의 1 이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"5회이내"를 "3회 이내"로 한다.

제45조 중 "30m이상"을 "30미터 이상"으로 하고, "제8조 규정에 의한"을 "제8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부천시 건축문화상)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매년 구조, 기능,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발굴 시상하는 부천시건축문화상(이하 "건축문화상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건축문화상의 시행과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건축문화상심사 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46조 중 "시행에 관하여 필요한"을 "시행에 필요한"으로 한다.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.

## "별지"

[별표 1]

#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(제17조 관련)

면 적	금 액		
다. 200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4천원		
	기 타 9천원		
라.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6천원		
다. 200세합니다 이경 1전세합니다 미년	기 타 2만원		
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	5만원		
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	10만원		
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	20만원		
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	<u>41만원</u>		
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			
30만제곱미터 이상	<u>162만원</u>		

<sup>※</sup>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.

# 대지 안의 공지 기준(제27조의2 관련)

# 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띄어야 하는 거리
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·준공업지역 외의 지역: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
다.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용건축물	・3미터 이상
라. 공동주택	· 아파트: 3미터 이상 · 연립주택: 2미터 이상 · 다세대주택: 1미터 이상
마.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	· <u>1미터 이상</u>

# 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띄어야 하는 거리
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・1미터 이상
나. <u>해당</u>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· 준공업지역: 1미터 이상 ·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: 2미터 이상
다. <u>해당</u>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・2미터 이상
라.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 이용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을 제외한다)	・2미터 이상
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다)	<ul> <li>아파트: 5미터 이상(다만, 15층 이하는 3미터 이상)</li> <li>연립주택: 2미터 이상</li> <li>다세대주택: 1미터 이상</li> </ul>
바.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	· 0.5미터 이상

#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

## □ 개정이유

- 「건축법」의 전면개정(법률 제8974호, 2008. 3. 21. 공포·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대통령령 제20647호, 2008. 2. 22. 공포·시행)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 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등을 추가로 규정함.(제8조제1항제3호·제4호, 제2항제6호, 신설)
  - 5층 이상 이거나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  - 미관도로 전면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않는 증축은 미관심의 대상에서 제외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조항 변경 등에 따라 건축조례 개정(제19조, 제34조)
-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: 조항변경(영 제113조→영 제27조의 2)
- 영 제15조제1항제3호 삭제: 가설건축물 층수 "2층 이하" 삭제
- 다. 「건축법」조항 개정으로 법령에 맞추어 조항 변경함.(제4조, 제4조의2, 제8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17조의3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9조, 제30조, 제30조의2, 제34조, 제44조)
- 라.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면적당 식재기준 등을 개정함.(제24조)
- 마.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.(제27조의2, 별표 4)
- 바.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상향 조정함.(제27조)
- 사.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부천시건축문화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.(제45조의2, 신설)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

제3조(적용의 완화) 시장은 법 제제3조(적용의 완화) 법 제5조제3항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.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
- 1. 당해 대지등에 법·영 및 시행 규칙(이하 "법령등"이라한다)을 적용 하기가 불합리 하게된 사 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 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경 우
- 2. 관계법령·제도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

제4조(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|제4조(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 례)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 및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- 1. 기존건축물의 재축
- 2.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

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완화 에 따라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타 필요한 사항은 「경기도건축

개 정 안

례)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 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 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 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.

- 1. 기존 건축물의 재축
- 2.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

#### 현 행

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 한 경우

② 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하 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·개정이나 영 제6조 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.

제4조의2(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)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·제51조 및 제53조의

#### 개 정 아

부분이 법・령・시행규칙(이하 "법령등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

3.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 또는 「도로 법」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건 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 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 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에서 증축 또는 개축. 다만,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 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.

세4조의2(리모델링에	대비한	특
례) <u>제8조</u>		
제56조·제60조 및 저	∥61조에	따른

현 행	개 정 안
<u>규정에 의한</u> 기준을 100분의	
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	
수 있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	
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	
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	
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	
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	
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	
계획에 <u>의하여야</u> 한다.	<u>따라야</u>
제5조(설치) 법 제4조 및 영 제5	제5조(설치)
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	<u>제4항에 따라</u>
시건축위원회(이하 "건축위원회"	
라 한다)를 둔다.	<u>.</u>
제6조(구성)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	제6조(구성) ①
장, 부위원장 <u>각1인을 포함하여</u>	<u>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</u>
<u>20인이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이내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	③
무원과 건축(건축계획분야, 건축	
구조분야, 건축설비분야, <u>기타분</u>	<u>그 밖의 분야</u>
<u>야</u> )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	
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	
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	⑤
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	
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	

## 현 행

를 거쳐 위촉하고, 임기는 <u>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 6 보궐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</u>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⑦ 영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- 1.~3. (생략)
- 4. <u>기타 품위등</u>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5. (생 략)

제8조(기능) ① 건축위원회는 영제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

## 개 정 안

<u>3년으로</u>
하되, 한차례만
⑥전임자
임기의 남은 기간
⑦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
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
의 심의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
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
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
이 되도록 한다. 이 경우 필요한
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
하여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위원
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
있다.
l7조(위원의 해촉)
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
1.~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품위 등
5. (현행과 같음)
8조(기능) ① 건축위원회는 영

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
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「주택법」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
- 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 용 대상 건축물

## ② (생략)

- 1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건축신 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 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
- 2.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사항

## 개 정 안

- 1.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주 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 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 동주택
- 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ㅣ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
- 3. 미관지구안의 5층 이상이거 나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 제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 공하여야하는 건축물
- 4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 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 의하는 사항
- ② (현행과 같음)
- 1.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 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 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 하는 설계변경 사항
- 2. ----------<u>범</u>위에서-----

# 혂 행 개 정 안 3.~5. (생략) 3.~5. (현행과 같음) 가. (생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대지면적, 세대수 또는 건 나. -----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위에서----다. 「주택법 시행규칙」제11조 다 -----제4항 및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시행령」제38조의 -----제38조에 따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<신 설> 6.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 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 ③ -----<u>제2호에</u> 따라--③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를 생략한다.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1. -----법률 \_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 ----제3항 단서에 따라----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 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 한 사항 2.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2. -----제6항에 따라 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 -----제5항에 따라-----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 략)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• ② (생 략)

-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 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당해 건축물의 심 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⑤ 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 하다.
- ⑥ (생략)
- ⑦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, 심의 결 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「공공기관」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이 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1조(간사 등) ① 건축위원회의 제11조(간사 등) ① ----

같음)
②
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제10조(회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3
사항은
<del></del>
<u>-</u>
<b>4</b> )
해당
<del></del>
(5)
아니하다.
<u> </u>
⑦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
있으면 위원별 의견, 심의 결과
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, 공
_ ᄎ ′ㄲㄲㄹ ㅇ◜叭ㄲㄲ ㄲㄲ, ㅇ

개 정 안

개에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

절차 등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

# 혂 햀 개 정 안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 기를 두되, 건축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실무자가 된다. 업무담당 및 담당자 ----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2조(비밀준수)위원 및 기타 건 제12조(비밀준수) -----그 밖에 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업무 -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----아니 된다. 제14조(일비등) 건축위원회에 출석 제14조(일비 등) 건축위원회에 출 한 위원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 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부천」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 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변상 조례 | 에 따라 일비 및 여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 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. 아니하다. 제15조(소위원회) ① 건축위원회의 제15조(소위원회) ① -----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-----3명 이상 5명 이하-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~④ (생 략) ②~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과 제10 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소위 부터 제14조까지-----

# 혂 행 개 정 안 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. 제16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|제16조(운영규정) -----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 영에 관한-----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 제1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법제1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· 법 제8조·제9조·제10조·제14조· 제14조·제16조·제19조·제20조 및 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야 한다. 제17조의2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|제17조의2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)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 예치금) ① -----제1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조제2항에 따라-----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의한 착공 -----제21조에 따른----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예치금(이하 "예치금"이라 한 다)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② 제1항에 따른 -----의 산정·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----- 따른다. 1.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 1. ------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

## 혂 햀 개 정 안 으로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14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 조제2항에 따라-----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 해양부장관---------<u>해</u>당-----축비에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을 곱한 금액 2.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2.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는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하며,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 여야 하며, 보증서의 보증기간 공기간(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 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)에 6개 은 시공기간(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)에 월을 가산한 기간 6월을 가산한 기간 3. (생략) 3. (현행과 같음) 4.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 4. ----- 제22조제2항----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(보증서를 포함한다)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 제17조의3(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 제17조의3(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 회) ① 시장은 법 제7조 또는 법 회) ① ---- 법 제10조 또는 제8<u>조</u>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 <u>법 제11조</u>-----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

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에 따라 해당 -----

용도·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

현 행	개 정 안
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	
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	
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,	
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 또는	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
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의 사항	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
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	
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	
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	
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(이	
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개최하여	
야 한다.	
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<u>제10조</u>	② <u>영 제10조</u>
의 규정에 의하며, 영에서 규정	<u>에 따르며,</u>
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	
에 관하여는 「부천시 민원사무	
처리 규정」 <u>제11조에 의한</u> 민원	<u>제11</u> 조에 따른
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.	
제18조(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)	제18조(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)
영 제11조제2항 <u>제3호의 규정에</u>	제3호에 따라
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	
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<u>각 호</u>
<ol> <li>축사, 농기계 보관창고, <u>기타</u></li> </ol>	1 <u>그 밖의</u>
농업용 건축물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가설 건축물) ① 법 <u>제15조</u>	제19조(가설 건축물) ① <u>제20</u>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	조제1항에 따라
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	
	,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
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 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하다.

- 1. (생략)
- 2.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. 다만,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
- 3.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일 것 4. 전기, 수도,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
- 5. (생략)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6. -----한 법률」 제64조 규정에 적합 ----제64조-----할 것
-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 ② -----제14호에 따른----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2 와 같다.

제20조(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제20조(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. 이 경 하는 업무로 한다. 이 경우 제4호 우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| 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

개	정	안
---	---	---

<u>각</u>	<u> </u>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 3년 이내----

## <삭 제>

---

4. ----- <u>가스 등</u>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무의 대행) ① 영 제20조제2항 무의 대행) ① 영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·사용승인 따른 건축허가·사용승인 및 임 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,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- 1.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  2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  3. 법 제14조·제15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,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  4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  5.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「건축사법」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중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조사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신청한

## 개 정 안

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, 건축주의 추전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- 1.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- 2.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- 3. 법 제19조·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,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
   4.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
- 5.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 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경우에는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지 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 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 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 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1조(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|제21조(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3에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 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.

- 1.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·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
- 2.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 행 시에는 10퍼센트

의 대행시 수수료) ① 법 제23조 의 대행시 수수료) ①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·검사 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「엔지 니어링기술 진흥법 | 제10조의 엔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 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다음

- 1.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
- 2.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・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

- 100퍼센트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의 지급시기와 방법·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2(건축물의 사용승인) 법 <삭 제> 제1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허 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사가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법 제25 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 받은 건축물로 한다.

제22조(건축지도원) ① 영 제24조 제22조(건축지도원) ① 영 제24조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- 1. 건축사
- 2. 「건축사법」에 의한 건축사보 로써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- 3. 건축직 공무원으로써 2년이

## 개 정 안

- 3.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·검 3.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· 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
  - ② 제1항에 따른 ----

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- 1. 건축사
- 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보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 는 사람
- 3.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

상의 경력이 있는 자 4.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 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 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 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
의 유지 ·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.

- 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
- 2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

제23조(대지안의 조경) ① 법 제32세23조(대지안의 조경) ① 법 제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 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등 조 | 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 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개 정 아

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.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 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

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
제22조의2(건축물의 유지・관리) 영제22조의2(건축물의 유지・관리)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제2항에서 "건축조례가 정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 하는 건축물"이란 연면적 5천제 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. 다만, 「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및 「주택법」에 따른 시설 1.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| 물의 유지관리는 해당법령에 따 른다.

> 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 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- 1. 연면적 (동일 대지안에 2동 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2 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: 대 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. 다만.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이상 2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 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: 대 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
- 3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: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
- 4.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: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 로 하다.

- 1. 연면적(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2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. 다만. 5천제곱 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
  - 2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
  - 3.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: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
  - 4.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 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시장 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 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  - 5.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 적의 5퍼센트 이상

-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 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<삭 제>
  - 2. <삭 제>
  - 3.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,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
  - 4.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 분의 2이상을 충족한 경우(초 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한 한다)
  - 5.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 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 이 정하는 건축물
- 6. 교정시설.군사시설
- 7.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(이하 "조경 면적"이라 한다)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- 1.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

#### 개 정 아

-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 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1 항제5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 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
  - 2.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 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(초 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한 정하다)
  - 3.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 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 이 정하는 건축물
  - 4. 교정시설, 군사시설

-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에 필요한 면적(이하 "조경면적" 이라 한다)의 산정은 다음 각 호 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│ 1.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

개

정

아

·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 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, 해당대지의 조경면적

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

없을 것

2.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 경을 위한 정자목(흉고직경 20 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 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 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을 독립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 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 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할 수 없을 것. 다만. 사업승인대 상 아파트는 제외한다.

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(처 마아래 등 수목의 생육이 불가 능한 부분은 제외한다)의 조경 면적은 그면적을 모두 산입

2.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 경면적(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 평투영 면적으로 한다) 및 지 표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옥 외·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 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, 당해대지의 조경면 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

3.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 경을 위한 정자목(흉고직경 20 센티미 터이상 교목으로서 수 고 4미터이상인 경우로 주변환 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 한한다)을 독립식재 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 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 할 수 없 을 것. 다만, 사업승인대상 아

파트는 제외한다.

혂

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 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경면 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등에 파고라, 조각물, 조원석, 연 못, 분수대, 고정분재, 만화캐릭 터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24조(식재등 조경기준) ① 제23 제24조(식재 등 조경기준) ① 제2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준에 따른다. 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. 1. 식재수량은 조경면적 1제곱 미터당 교목은 0.2주이상, 관목 은 3주이상

2. 식재하여야 할 낙엽교목은 흉고직경 10센티미터이상이거 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이상 또는 상록교목은 수관폭 1.5미 터이상으로서 수고 3미터이상 3.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.2미터이상

조 규정에 의한 대지안에 설치 조에 따라 대지안에 설치하는 하는 조경의 식재기준, 식재수량 조경의 식재기준, 식재수량 및 및 규격등은 다음 각호와 같으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 며,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

- 4. 옥상조경의 인공지반의 식재 토심은 0.9미터이상
- 5.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, 섬죽등 지 피식물로서 녹화
- 6. 하나의 조경식재면적은 4제 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, 최소 폭은 다음 각목의 폭이상으로 할 것. 다만, 허가권자가 인정 하는 부이 한 사유가 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가.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: 2미터
  - 나.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 천제곱미터미만: 1.5미터
  - 다.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 : 1미터
- 7.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의 면 적은 12제곱미터이상
- 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 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 에 의하여 조경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승강기탑, 계단탑, 옥탑 기 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

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 다. 다만, 승강기탑, 계단탑, 옥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 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

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20세대이상은 1그루이상, 100세 대이상은 3그루이상을 보기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.
- 이상
- 이상
- 3. 기타수종 : 수고 4미터, 수관 폭 3미터이상
- 제25조(담장의설치) 대지경계선(건 제25조(담장의설치) ---축선을 포함한다)에는 담장을 설 치하는 대신에 <u>조경시설등으로</u> -----<u>조경시설</u> 차폐식수를 할 수 있다.
-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 1항에 따라-----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  - 1.~2. (생 략)

#### 개 정 아

-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 는 제1항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 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 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.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.
  - 1. 흉고직경수종 : 20센티미터 1. 흉고직경수종: 20센티미터 이상
  - 2. 근원직경수종 : 30센티미터 2. 근원직경수종: 30센티미터 이상
    - 3. 그 밖의 수종: 수고 4미터, 수관폭 3미터 이상

11403	( 口 )	3 1 5	2/1/			
				 	 	_

등으로-----.

제26조(도로의 지정) 법 제35조제1 제26조(도로의 지정) ---제45조제

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~2. (현행과 같음)

- 3. 공원내 도로
- 4. (생략)
- 5.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 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

제27조(대지의 분할제한) 법 제49제27조(대지의 분할제한) -제57조 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 지를 분할할 수 없다.

- 1. (생략)
- 2. 일반주거지역: 60제곱미터
- 3. 준주거지역 : 70제곱미터
- 4. (생략)
- 5. 일반상업지역 : 150제곱미터
- 6. 근린상업지역: 150제곱미터
- 7.~11. (생략)
- 12. 생산녹지지역 : 200제곱미터
- 13. (생략)
- 14.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 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 계획구역외의 지역 : 60제곱 미터

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 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

## 개 정 안

- 3. 공원 내 ----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----
- ---같은 통로----

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 조에 따라-----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일반주거지역: 90제곱미터
- 3. 준주거지역: 90제곱미터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일반상업지역: <u>200</u>제곱미터
- 6. 근린상업지역: 200제곱미터
- 7.~11. (현행과 같음)
- 12. 생산녹지지역: 350제곱미터
- 13. (현행과 같음)
- 14.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 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 계획구역외의 지역: 90제곱미 터

제27조의2(대지안의 공지) 법 제50 제27조의2(대지안의 공지) - 제58 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--

# 혂 햀 개 정 안 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제28조(맞벽건축 등) ① 영 제81조 제28조(맞벽건축 등) ① --제8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 제1항제2호에 따라 -----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. ---- 따른다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1. • 2. (생 략) 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3. 그 밖에 허가권자가----정하는 대지 상호간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9조(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제29조(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 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) 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)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 ① --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(교통광장을 포함한다)에 접속하 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-----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 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조제3항-----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 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속한 -----8분의 1 이상----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. 다만, 대지와 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 8분의 1 이상-----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.

## 혂 행 개 정 아 1.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 선으로부터 35미터이하의 부분 ----35미터 이하-----2.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 2. 제1호----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 -----해당---------<u>10미</u>터 이하 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 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 3. -----제2호---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 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하의 부분 35미터 이하----②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 ② --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거 도로 반대측에 공원, 광 장, 하천, 철도, 공공공지, 시설 녹지,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 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 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 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.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 ③ ---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 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법 제3항-----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도로의

### 혂 행

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. 제30조 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 제한) ① (생 략)

- 1. 높이 <u>4미터이하</u>인 부분은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
- 2. 높이 <u>8미터이하</u>인 부분은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
- 3.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<u>당</u> <u>해</u>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
- ② (생략)
-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.5미터 이상인 다세 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

제30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
축물의 높이 제한) ① (현행과
같음)
1 4 <u>미터 이하</u>
2 8미터 이하
3
<u>ই</u> ম
<u>당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제86조제2항 단서</u>

개

정

아

## 혂 행 개 정 아 한다. ⑤ (생 략) ⑤ (현행과 같음) 제30조의2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제30조의2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》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)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\_ 제31조제 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 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 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· 미관·일조·채광 및 통풍을 고려 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 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 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 지의 수평거리를 제53조제2항에 ----제61조제2항-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 여 건축할 수 있다. 제34조(공개공지의 확보) ① 영 제제34조(공개공지의 확보) ① 영 제 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(이하 (이하 "공개공지등"이라 한다)을 "공개공지등"이라 한다)을 확보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면적은 다음과 같다. 은 다음과 같다. 1. 대상건축물 : 영 제113조제1 1. 대상건축물: 영 제27조의2제1

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

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

#### 혀 햀

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 활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 생활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 설(학교를 제외한다), 노유자시 설, 생활권수련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

- 2. 면적 : 제1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 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 이상. 다만.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 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 - 가.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 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: 대지면적의 5퍼센트
  - 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: 대지면적의 7퍼센트
- 다.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 터이상 : 대지면적의 10퍼 센트
-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(생략)

### 개 정 안

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시설(학교를 제외한다), 노유 자시설, 생활권수련시설, 운동 시설 및 위락시설

- 2. 면적: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 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 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 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 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. 다 만,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 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 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.
  - 가.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 <u>터 이상 1만제</u>곱미터 미만: 대지면적의 5퍼센트
- 나.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 나.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 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: 대지면적의 7퍼센트
  - 다.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 터 이상: 대지면적의 10퍼센 三
  - ② 제1항에 따른 -----
  - 1. (현행과 같음)

#### 현 행

- 2. 2개소이내로 설치하되, 1개 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
- 3. 4. (생략)
- 5.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 상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 준으로 식재할 것. 다만, 조경 면적 산입은 공개공지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.
- 6.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벤치 6. -----파고라·시계탑·분수·조도 50룩 스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상-----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
-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  - 1. 용적율의 완화 : 다음 산식 1. 용적율의 완화: 다음 산식에 적))× 「부천시 도시계획 조 례」에 의한 용적율
  - 2.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: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 이 이하(1+(공개공지등 면적 : 대지면적))×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기준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|

### 개 정 안

- 2. 2개소 이내----------45제곱미터 이상
- 3. 4. (현행과 같음)
- 5. -----40퍼센트 이상 을 제24조에 따른-----
- -----50룩스
- 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율 이하 따라 산출된 용적율 이하(1+ (1+(공개공지등 면적 ÷ 대지면 (공개공지등 면적÷대지면적))× 「부천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른 용적율
  - 2.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: 다 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(1+(공개공지등 면적÷대 지면적))×법 제60조에 따른 높 이 제한 기준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

#### 혂 햀

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 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 적을 제외

제43조(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|제43조(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 용)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, 저장시설(시멘트저장용 싸이 로를 포함한다), 유희시설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 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 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.

- 1. 제조시설 : 레미콘믹서, 석유 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
- 2. 저장시설 : 사이로, 건조시 설. 석유저장시설. 석탄저장시 설, 기타 이와 유사한 것
- 3. 유희시설 : 「관광진흥법」 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 이 아닌 것
- 4. 호이스트
-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 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

#### 개 정 악

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 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

용)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, 저장시설(시멘트저장용 싸이 로를 포함한다), 유희시설,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. 1. 제조시설: 레미콘믹서, 석유

- 화학제품제조시설,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
- 2. 저장시설: 사이로, 건조시설, 석유저장시설, 석탄저장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- 3. 유희시설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 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 닌 것
- 4. 호이스트
- 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

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이상(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 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)인 냉각탑, 냉장고, 종탑, 물탱크, 변전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5톤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.

제44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법제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69조의2 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.

②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 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 단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

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이상(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)인 냉각탑, 냉장고, 종탑, 물탱크,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.

<u>나.</u>	
]44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-	-
<u>제80조제1항</u>	-
	-
	٩Ì
80조제1항제2호	_
	-
	-
	-
	-
②제83조에 따른 옹벽 등	0
	-
	-
<u></u> 별표 <u>15</u>	_
<u>제15호에 따라</u>	

# 혂 햀 개 정 안 ----<u>100</u>분의 1 이하----시가표준액의 100분의1 이하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.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 ③ <u>제1항에 따른</u>----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-- 3회 이내----. 총 5회이내로 한다. 제45조(야간경관조명) 시장은 폭제45조(야간경관조명) ---30m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 제 30미터 이상----------제8조에\_ 따른---8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 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 관조명계획 및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. <신 설> 제45조의2(부천시 건축문화상)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매년 구조, 기능,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발굴 시상하는 부천시건축문화 상(이하 "건축문화상"이라 한다) 을 시행할 수 있다. ② 건축문화상의 시행과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건축문화상심사 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 다)를 두며,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 제4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제46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필요한-----

정한다.

### 〈관계 법령발췌서〉

### ○ 건축법 시행령

- 제5조 (건축위원회) ①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.
  - 1.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
  - 2.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- 3.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
  -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·임명·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,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· 운영할 수 있다.
  - 1. 건축계획 분야
  - 2. 건축구조 분야
  - 3. 건축설비 분야
  - 4. 건축방재 분야
  - 5.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
  - 6.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(景觀) 분야(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)
  - 7. 조경 분야
  - 8.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
  - 9.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
  - 10. 사회 분야
  - 11. 그 밖의 분야
  -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 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다.
  - 1.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(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)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  - 2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(建築線)의 지정에 관한 사항
 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(이하 "다중이용 건축물"이라 한다)의 건축에 관한 사항
  - 가.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- 나. 16층 이상인 건축물
  - 4.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(이하 "건축조례"라 한다)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  - 5.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

- 의 건축에 관한 사항
- 6.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
-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허가권자"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.
- ⑦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·임명·위촉·임기 등에 관한 사항,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1. 위원의 자격 · 임명 · 위촉 기준 및 임기
  - 가.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
- 나.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
- 다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
- 라.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.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- 마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 할 것
- 2. 심의에 관한 기준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 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
- 나.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, 제5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·군·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
- 다.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라.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
  - 마. 위원별 의견,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

#### [전문개정 2008.10.29]

- 제15조 (가설건축물)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말한다.
  - 1.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
  - 2.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. 다만,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3. 전기·수도·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

- 4. 공동주택·판매시설·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
-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1.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
- 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
- 2.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, 가설전람회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- 3.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
- 4.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- 5.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·공 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(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)로서 안전·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
- 6.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
- 7.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
- 8.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·임시창고 또는 임 시숙소로 사용되는 것(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9.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·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·어업용 비닐하우스 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
- 10.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, 가축운동용,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
- 11.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
- 12.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- 13. 유원지,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·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
- 1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-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, 법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,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,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-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.
-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

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,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8.10.29]

- 제27조의2 (공개 공지 등의 확보)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(이하 이 조에서 "공개공지등"이라한다)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- 1.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(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), 운수시설,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
  - 2.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  -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. 이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.
  - ③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(公衆)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(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)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 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1.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.2배 이하
  - 2.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.2배 이하
  -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(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의 대 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10.29]